

시설격리 동의서

성명 Name(姓名,氏名)	생년월일 Date of Birth(出生日期, 生年月日)
국적 Nationality(国籍)	선박·항공기명 ship·Flight No. (船舶, 航空, 航空便名)
여권번호 Passport No. (护照号码, パスポート番号)	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 (到達日期, 到着の日付)

<안내>

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여 2020년 4월1일 0시(도착기준)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(한국인과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) 또는 시설격리(단기 체류자격 외국인)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: B-1, B-2, C-1, C-3, C-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
-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: 단기 체류자격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

<제출대상 및 미제출 시 불이익>

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본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,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『출입국관리법』, 『검역법』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시설 격리>

본인은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고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42조, 『검역법』 제16조 등에 따라 입국 후 대한민국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시설에서 14일 간의 격리조치를 받음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<비용 납부>

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 14일 간 시설 격리로 발생하는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제반비용을 총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(1인당 최대 KRW 2,100,000)을 입국 시 전액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<출국 조치>

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 14일 간의 시설 격리 및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납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출국명령 등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작성일 Date 付)	년 일	월	작성인 Completed by (Signature)	(서명 또는 인) (簽字, 作成人)
대한민국 정부 귀하				